

‘큐피인형’ 상표소송, 큐피만의 것이 아니다

큐 피 인형의 그림을 상표로서 사용해 왔던 운송회사가, 마요네즈 대기업「큐피」의 청구로 운송회사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 특허청의 심결취소를 구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10월 29일 도쿄고등법원에서 있었다. 재판부는「양사의 상표는 용이하게 식별가능하고 업무 분야도 달라서 혼동의 염려는 없다」라고 해서 심결을 취소했다.

운송회사는「큐피이사센터」이름으로 이사업을 행하고 있는 東京都 調布市の「아라마키(荒牧) 운수」이다. 판결에 의하면 동 회사는 1978년 무렵으로부터 큐피인형이 양손에 수하물을 갖고 타이 어 위를 걷고 있는 그림을 상표로서 사용하고, 1997년에 상표등록을 했다.

재판부는 (1) 큐피 인형은 원래 미국 화가가 잡지에 그렸던 그림이 모델이고, 193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도 셀룰로이드제 완구 등으로 폭넓게 친숙해져 왔고, (2) 다른 여러 기업도 동 인형을 모티브로 한 상표를 등록하고 있다 등을 근거로「큐피 인형이 큐피로만 인식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폭넓게 알려져 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ewpie Homepage
Food, for ages 0-100



〈참고〉 좌; 마요네즈대기업상표, 우; 운송회사상표

출처 닛케이신문 인터넷판

청색LED발명 대가소송, 판결은 내년 1월 30일에

청 색발광다이오드(LED)」를 발명했는데 회사측으로부터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나카무라 슈우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수가 니치아화학공업에 대해 200억엔을 요구한 소송에 대한 심리가 24일 동경지방법원에서 종료되었다.

특허권 그 자체는 동사에 귀속한다는 중간판결이 이미 나와있어 내년 1월 30일의 판결에서는 정당한 대가액에 한하여 판단하게 된다.

쌍방은 이 날까지 다른 대형 감사법인에 의한 특허평가액에 대한 감정서를 제출했다. 이 특허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창출한지를 감정한 것이지만, 나카무라 교수측이 2,652억엔이라고 한 것에 대해, 니치아측은 「2001년말 시점에서 약 230억엔의 이익을 주었지만 개발비 등을 공제하면 약 15억엔의 손실」이라고 정반대로 평가하였다.

특허법에 의하면 사원이 발명한 특허의 실시권은 회사에 있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사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나카무라 교수는 2만엔 정도의 보장금 밖에 받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출처 아사하신문 인터넷판

라이코스, Overture 상대로 Web 광고관련 소송 제기

라이코스사는 야후사의 Overture Service 사업 부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웹서치 페이지에서 Overture의 텍스트 광고 사용을 중단하였다.

메사츄세츠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라이코스사는 "Overture사가 만약 양사의 관계에 대한 통제가 라이코스의 경쟁자에게 양도될 경우 라이코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서비스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야후가 Overture를 매입하였을 때 Overture는 라이코스와의 계약을 지속할 것 인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도 얻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야후가 라이코스 와 Overture의 이러한 관계를 간과 함으로써 라이코스가 필수적인 서비스를 주요 경쟁자에게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Overture는 필연적으로 야후에게 라이코스의 기밀 및 영업비밀 정보를 공개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Overture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라이코스 측은 주장하였다.

라이코스는 손해배상과 800,000달러의 fee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Overture의 대변인은 동소송에 대해서 응대하지 않고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라이코스가 자사의 텍스트 광고 사용을 중단할 권리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Overture사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Overture는 6월 분기 동안 라이코스사와 광고배포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7월에 야후는 Overture의 매입 의사를 밝혔고, 이는 10월초에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인수 뉴스는 투자자와 산업계에서 Overture가 마이크로소프트의 MSN 온라인 부문과 라이코스 와 같은 포털 서비스에 있어서 야후와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출처 The Associated Press


상당한 생각 하나 빛나는 발명 하나

라코스테사(프랑스)와 크로코다일사(홍콩)의 악어모양 상표분쟁 화해성립

악 어 마크로 유명한 프랑스의 의류품 회사인 라코스테¹⁾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고 하여 홍콩의 크로코다일사를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소송(중국 북경)에서 크로코다일사가 2006년 3월말까지 현재의 상표를 폐지하고, 새로운 마크(구부러져있던 악어의 꼬리가 활짝 펴짐)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되었다.

라코스테는 1980년에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하였고, 크로코다일사와의 합의로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라코스테와 혼동하기 쉬운 마크를 등록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지만, 이후 크로코다일사가

중국에 진출함으로써 1998년에 소송이 제기된 것이었다. 크로코다일사는 1952년 창업하였고, 악어의 마크는 라코스테사와 방향이 반대로 중국대륙에서는 1990년대에 의류품 판매망을 넓혔다.

라코스테사의 마크	크로코다일사의 마크	
		舊마크(左) 新마크(右)

출처 아시아신문

1) '라코스테'는 1920년대 '뱀불던' '프렌치 오픈' 'US오픈' 등에서 연속 우승한 프랑스인 테니스 선수 '르네 라코스테'가 1933년에 창시한 브랜드이다.

플래쉬메모리 발명의 대가에 대한 소송제기

휴 대전화 등에 넓게 사용되고 있는 기억소자인 플래쉬메모리의 일부 특허를 가지는 미츠비시전기를 상대로 前사원이 「발명의 대가가 정당하게 지불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여 약 2억엔의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那覇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소장에 의하면 前사원은 동사에서 반도체메모리 제품의 설계개발에 종사하였고 플래쉬 메모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와 기능을 단독으로 발명했다고 하고 있다. 플래쉬메모리를 위시한 5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동사에 양도하고 동사가 특허를 취득했다.

동사로부터 약 500만엔의 대가가 지불되었지만

前사원은 제품의 매상 등을 고려하면 약 58억엔의 대가가 있다고 주장하고 특허법에 의거, 이중 일부에 해당하는 2억엔의 지불을 요구하였다. 前사원은 01년에 퇴직하였고 그 후 대가의 지불을 둘러싸고 동사와 교섭을 계속하고 있었다.

플래쉬 메모리는 전원을 꺼도 내용(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PC나 복사기, 디지털 카메라 등에 사용되고 있다. 입출력이 빠르고, 소비전력도 적어 90년대에 개발경쟁이 격화. 휴대전화에 이용되면서 수요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미츠비시 전기홍보부는 「소장을 보고 있지 않아 코멘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아시아신문 인터넷판

InterTrust사와 MS사의 특허분쟁의 새 국면 : Macrovision사의 주장

In terTrust사와 MS사간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불리한 국면에 처해있던 MS사는 Macrovision사와 InterTrust사의 특허저촉심사절차(Interference Proceeding)의 결과에 따라 그 걱정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InterTrust사는 현재 MS사의 거의 모든 주요 소프트웨어-Windows OS부터 Media Player와 게임기 Xbox까지 약 144개의 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의 Preliminary Hearing²⁾에서 연방판사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얻어내 바 있는데 이러한 양사의 특허소송이 Macrovision사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InterTrust사와 Macrovision사가 진행하고 있는 Interference Proceeding에서 미국 특허청은 양사의 특허가 실제로 동일한 것인지와 한 회사만이 권리를 가질 것인지에 대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Macrovision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Macrovision사의 특허는 File이 디지털적으로 보호되어지도록 준비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관련 디지털 지재권의 핵심이어서 Macrovision의 특허를 침해함이 없이 InterTrust사의 기술을 실행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양사의 해당 특허가 동일한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도 Macrovision사는 InterTrust사 특허권의 상당한 부분을 양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Macrovision사의 Brian Dunn 부사장은 “이 경우 Macrovision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MS와의 법적 분쟁을 원하지 않으며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허실시권 합의를 모든 당사자와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밝혔다.

InterTrust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Macrovision사의 특허는 지금은 없어진 MediaDNA사로부터 양수받은 것인데 InterTrust사에게도 제안이 있었으나 거절한 것으로서 문제가 된 특허는 InterTrust사의 핵심 지재권이 아주 작은 부분(a tiny fraction)과 관련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InterTrust사가 지더라도 InterTrust사의 기본적인 특허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전문 변리사들에 따르면 이번 특허청의 Interference Proceeding의 결과는 단시일 내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으며 수년도 걸릴 수 있고 그 결정은 연방관리들에 달려 있다고 논평하고 있다.

출처 CNET News.com

발명으로 앞선기술 기업튼튼 미래튼튼

2) 재판에서의 용의의 정리와 관련특허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사전절차로서, 지난 7월 3일 당해 사건에서 Sandra Brown Armstrong 연방판사는 InterTrust사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캐논의 前사원이 발명의 대가로 10억엔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레 이지빔 프린터(LBP)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정밀한 화상을 기록하는 기술에 대한 「발명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하여 캐논의 전사원이 동사를 상대로 대가의 일부로서 10억엔의 지불을 구하는 소를 동경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사원의 직무발명을 둘러싸고서는 기업쪽의 보수에 납득할 수 없는 사원이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소장에 의하면 전 종업원은 1968년에 캐논에 입사·동사가 LBP의 소형화를 개발하는 가운데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화질의 저하가 발생하였지만 그는 이것을 해결하는 기술을 고안하였다고 한

다. 동사는 이 발명을 이용한 LBP 등으로 세계 6할 이상의 마켓셰어를 가지고 있고, 동업 타사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이익을 거두었고 그를 사내에서 표창하는 등 대가로서 85만엔을 지불하였다.

전 사원쪽은 회사가 획득한 특허의 대가를 약 458억엔으로 산정하였는데 「문제의 발명은 업무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해석, 개인적으로 소유한 탁상계산기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회사의 공헌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전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주장하고 그 일부를 청구한 것이다.

출처 일본경제신문 인터넷판

상표권 침해로 피자헛을 제소, 배상 청구액은 1元

北 京必勝客比薩餅公司(피자헛)의 새 점포 명칭을 둘러싸고, 배상금 1元을 요구하는 상표권 소송이 제기되었다. 원고인 택배회사·北京宅急送快運公司是 피자헛의 배달전문 새 점포 「必勝宅急送」에 원고 상표인 「宅急送」의 문자가 사용되어 있는 것 외에 「必勝宅急送」이라고 하는 명칭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자헛을 제소했다. 원고는 피자헛이 원고의 허가없이 「宅急送」의 상표를 사용하고, 「必勝宅急送」이라고 하는 캐치 카피로 대규모 광고 선전을 해, 소비자에

게 피자헛과 宅急送이 관계가 있는 것같은 인상을 주어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다. 또 「必勝宅急送」이라는 명칭에는 「피자헛의 택배 서비스」의 의미외에 반드시 「宅急送」을 패배시킨다는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宅急送의 신용을 떨어뜨리게 되어 합법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 행위 중지와 손해배상 1元의 지불을 요구하며 법원에 제소했다.

출처 인민망

長虹의 HDTV상표권침해소송, 國歌工商總局이 厦華의 소를 물리치다

중 국의 대기업 컬러 텔레비전 제조사인 厦門 華僑電子企業有限公司(厦華)가 同四川長虹電器股份有限公司(長虹)에 대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 國家工商總局은 전국의 工商局에 「長虹사는 디지털 고화질 텔레비전의 상표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결정을 내려 보냈다.

이 분쟁은 厦華가 디지털 고화질 텔레비전 「CHDTV(China High Digital Television)」의 상표권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長虹을 제소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HDTV는 단지 고화질 텔레비전의 이니셜의 나열에 지나지 않고, 널리 「보통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또, 國家工商總局的 최종 판단

은 「長虹은 「長虹」「CHANGHONG」등의 등록상표를 명기하고 있어, 해당 상품이 디지털 고화질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만으로 소비자의 오해를 낳는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해 상표법실시조례 제49조에 기한 정당한 사용이라고 인정했다. 현재 國家工商總局的 결정서는 벌써 상하이, 복건 등 18개의 성·직할시에 정식으로 보내졌다. 長虹의 대변인 劉海中에 의하면 「厦華의 소송은 상표권의 이름을 빌어 괴롭히는 것으로 벌써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고, 厦華를 상대로 反訴를 제기하기 위해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해, 厦華와 전면 대결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biztech

발특2003/12



결핵진단약

전염병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빼앗아 간다. 이 치명적인 전염병들에 대한 원인 규명과 치료약의 발명으로 예방과 치료법에 혁신을 가져온 사람이 있다. 독일의 로베르트 코흐다. 그는 결핵균이나 탄저병균, 콜레라균과 같은 병원균을 발견하여 각종 전염병의 원인이 미생물에 의한 것임을 증명했다.

1866년 독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코흐는 시골에서 병원을 개업,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다. 그

는 전염병의 원인이 미생물이라는 파스퇴르의 발표에 큰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아내에게 생일선물로 받은 현미경을 이용하여 죽은 양의 피를 관찰하였다. 또 소의 눈물, 탄저병에 걸려 죽은 쥐 등으로 실험하여 병원체를 발견하고, 1882년 염료를 사용해 결핵균을 밝혀냈다. 결핵이 병균에 의한 전염병인 것을 확인한 코흐는 결국 투베르쿨린이란 결핵진단약을 발명하였다.